

중국 재정부 신규 세제 정책에 따른 직구시장 동향

자료 작성 : aT 상하이지사

□ 직구시장 부작용 억제하기 위한 신규 세제 정책 발표(3.24/4.7)

- 중국 상무부의 발표(7.28)에 의하면 '15년 중국의 대외무역 형태는 예년에 비하여 급격하게 다양화되었으며, 더욱 복잡해졌음. 중국 해관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15년 수출입 총액은 24조 5천 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실적은 7%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전 세계 무역대국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무역 형태 중 특히 직구 시장의 성장률은 30%를 초과함
- 급속도로 성장한 직구 시장의 이면에 저가 경쟁, 탈세, 불공정경쟁 등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한 중국 정부에서는 두 차례[《직구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세수 정책 통지》(关于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税收政策的通知)3.24/《직구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리스트》(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4.7]에 걸쳐 신규 세제 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으며, 발표 전·후 업계와 언론의 해당 발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다수

1) 신규 해외 직구 종합세

- 1회 관세 면제 한도(거래액) 2,000위안으로 조정, 1년 관세 면제 한도(거래액) 20,000위안으로 제한
- 50위안 미만 면세 혜택 폐지하고, 증치세(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합계 70%를 과세
- 한도 내에서는 관세율을 0%로 조정하고, 증치세와 소비세를 각각 30% 감면
- 한도 초과 분은 일반무역 수입 화물과 같은 금액으로 과세

2) 신규 행우세

- 기존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B2C) 수입품은 행우세 폐지 대상이며, 해외에서 반입되는 개인용 우편물은 행우세 유지 대상
- 기존 개인용 우편물에 적용되는 행우세 50위안 미만 면세 혜택은 취소

▷ 행우세란?

- 행우세는 '짐(行李)'과 '우편물(邮递物)'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단어로 수입세의 약칭이며, 중국 해관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짐과 개인 우편물에 징수하는 수입세

3) 소매 수입 상품 리스트

- 1차로 1,142개 분류 상품 발표(신선식품 및 액체유제품 미포함/애완동물식품, 와인 등 상품 포함), 2차 인가 품목은 151개 분류로 농림수산물 중에는 64종 품목 및 수입쿼터제 적용품목 13종 포함*

□ 업계 및 소비자의 비난에 따른 정책 유예 발표(5.25)

- 갑작스러운 정책 시행에 따른 해외직구 주문량 급감, 관련 업체 및 소비자 피해 막심으로 중국 해관총서에서는 관련 업체에 기존 정책 개편안을 '17.5.11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함(5.25)
- 향후 1년간 10개 '1선' 시범 지역(상하이, 항저우, 닝포, 정저우, 광저우, 선전, 충칭, 톈진, 푸저우, 평단)에 대하여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관을 실시하며, 기존 '소매수입 상품 리스트' 발표에 따른 화장품, 영유아 조제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약용 식품

등)에 따른 최초 수입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 요구 조건도 잠정 중단됨

- 시범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기존에 공지되었던 세제 개편 안을 변경없이 그대로 시행

□ 영유아조제배합분유 등록관리방법 반포(6.8)

-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국에서 《영유아 조제배합분유 등록관리방법》을 반포하였으며, 해당 방법에 의거하면 중국 국내에서 생산판매하거나 수입된 모든 영유아 조제배합분유제품은 모두 등록 및 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 각 기업 당 3개 브랜드 시리즈의 9가지 제품 브랜드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해당 방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으로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킴
- 또한 정식 등록증서를 사전 취득해야만 해외 직구를 통한 수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공장 미등록 제품은 통관 불허함('18.1.1 부터)

□ 시사점

- 일련의 발표를 통하여 기존에 통관신고서 없이 수입되던 직구 상품들이 모두 복잡한 검역 과정을 거치게 되어 통관규제가 강화됨. '소매 수입 상품 리스트'에 표시된 1,239개 품목에만 적용된다고 질검총국에서 강조하였으나, 사실상은 해외직구 수입상품 전체에 대한 규제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음
- 중국 정부에서 4.8부터 시행 예정인 정책이 4.7에 발표되고, 2차 '소매 수입 상품 리스트'는 4.15에 추가로 발표되었으며, 5.15에 재차 1년 유예 정책을 발표하는 등 업계에 파란을 가져 올 수 있는 정책이 사전 공고없이 연이어 공표되어 업계와 소비자의 혼란과 불만을 야기함
- 넓은 각도에서 보자면, 신규 세제 정책은 시장의 투명성과 불공정경쟁 비율의 축소 등을 위한 조치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정책이며, 조제분유, 건강기능식품 등 중국 해외 직구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식품의 경우는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식 등록증서 취득, 국무원 비안 등록 등 각종 증명 및 서류를 완비하여 신규 세제 정책 시행에 대비해야 함

<참고>

개인용 우편물 행우세(변경 후)

세목	품목	세율
1	서적, 교육용 영상, 디지털제품, 식품음료, 금은제품, 가구, 완구, 여가용 제품 등	15%
2	스포츠용품(골프 제외), 방직제품, 전기용품, 1·2번 제외한 모든 제품	30%
3	담배, 주류, 장신구 및 보석류, 골프용품, 화장품, 고급시계 등	60%

* 세목 1 : 최혜국 세율이 0%인 상품 / 세목 3 : 소비세를 납부하는 사치품 / 세목 2 : 그 외 기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 인가 품목 리스트(1차)

품목 분류	품목 번호	개수
농림수산물	1~269번	269개
광산물	270~292번	23개
화공제품(화장품 포함)	293~366번	74개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367~436번	70개
섬유원료 및 제품	437~784번	348개
생활용품	785~806번	22개
철강금속	807~896번	90개
기계 및 전자, 전기	897~1040번	144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 인가 품목 리스트(2차)

품목 분류	품목 번호	개수
농산물	1~106번	106개
화학공업제품	107~137번	30개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138~140번	3개
생활용품(주얼리)	141번	1개
전기설비	142번	1개
의료기기	143~151번	8개